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 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 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 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아이 대한법률구조공단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 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



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최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내란의 죄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년	108조1항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죄	5년	108조2항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년	87조2호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내란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111조1,2항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88조	동 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죄	10년	90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년	113조
◇ 외환의	죄◇		◇ 공안을 해?	하는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조1항
여적죄	25년	93조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114조2항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소요죄	10년	115조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117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118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간첩죄	25년	98조	폭발물사용죄	25년	119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 죄	10년	120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99조	100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121조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죄	10년	101조	◇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직무유기죄	5년	122조
◇ 국기에 관한죄 ◇		직권남용죄	7년	123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불법체포감금죄	7년	124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년	125조
◇ 국교에 관	◇ 국교에 관한 죄 ◇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년	10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Or Kr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www.klac.or.kr#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	7년	* 154조,152조2 항
간순수 뢰죄	7년	129조1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 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증인은닉죄	7년	155조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131조1,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 무고의 조	♦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무고죄	10년	156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 신앙에 관한	죄◇	
◇ 공무방해에 관	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분묘의 발굴죄	7년	160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년	138조	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변사체검시방해죄	5년	16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 방화와 실화의 죄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년	164조2항
투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투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 도주와 범인은 느	취의 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년	145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투수도주죄	7년	146조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연소죄	10년	168조1항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연소죄	7년	168조2항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150조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실화죄	5년	170조
◇ 위중과 중거인및	별의 죄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년	171조
위증죄	7년	15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172조2항

좌 명	공소시효	조문	좌 명	공소시효	www.klac.c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수도 음용수 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가스 · 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가스 · 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 죄	5년	197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후단	◇ 아편에	관한 죄 🔷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년	173조의2 1항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년	199조	
◇ 일수와 수리•	Ⅱ 관한 죄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년	200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년	201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년	177조 2항	아편등의 소지죄	5년	20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 통화에 관한 죄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년	211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교통방해	의 죄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일반교통방해의 죄	10년	185조	유기증권의 위조등 죄	10년	214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허위유기증권의 작성등죄	7년	216조	
교통방해치시상죄	15년	188조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년	21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년	219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 음용수에 3	관한 죄 🔷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 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 해죄	10년	192조 2항	◇ 문서에	관한 죄 🔷		

大○作》대한법量구조공단

					Corking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pri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www.klac.or.krif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 사죄	10년	225조, 229조	◇ 살인의 최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 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250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 죄	7년	227조, 229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 사죄	10년	227조의2, 229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252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 229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년	253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 229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 죄	7년	231조, 234조	상해죄	7년	257조1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시죄	7년	232조, 234조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 사죄	<i>7</i> 년	232조의2, 234조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	5년	233조, 234조	특수상해죄	10년	258조의2
_'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 인장에 관한 최 ◇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	<i>7</i> 년	238조	_폭행죄 	5년	260조1항
행사죄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	 5년	239조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행사죄		20955	특수폭행죄	7년	261조
◇ 성풍속에	관한 최 ♦		폭행치상죄	7년	262조 257조1항
간통죄	5년	241조	폭행중상해, 존속 폭행중상해 죄	10년	262조 258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 <i>조</i> 2항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 과실치	사상의 죄 🔷	
공연음란죄	5년	245조	과실치상죄	5년	266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과실치사죄	5년	267조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7년	268조
도박개장죄	7년	247조	치시상죄		
복표발매죄	7년	248조 1항	◇ 박	#의 죄 ◇	
복표발매중개죄	5년	248조 2항	낙태죄	5년	269조1항,
복표취득죄	5년	248조 3항	1 1 1 1	56	2항

최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www.klac.c	
촉탁 · 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278조, 277조 1항	
촉탁 · 승낙낙태치상죄	7년	269조 3항,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 죄	7년	270조 3항,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 죄	10년	270조 3항,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 유기와 호	나 대의 죄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유기죄	5년	271조 1항	◇ 협박의	비죄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271조2항,4항	협박죄	5년	283조 1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i>7</i> 년	271조 3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영아유기죄	5년	272조	투수협박죄	7년	284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 약취와 유	P인의 죄 ◇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아혹사죄	7년	274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10년	288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인신매매 죄	7년, 10년	289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10년	290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 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살인 : 25년 치사 :15년	291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 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 의 수수 은닉 등 죄	7년	292조	
◇ 체포와 김	남의 죄 ♦		◇ 강간과 추행의 죄 ◇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강간죄	10년	297조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유사강간	10년	297조의2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강간등 살인죄	25년	301조의 2전단	

★○年》대한법量구조공단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www.klac.or.kr// to
		조 판 301조의2	, -		(27-m, 2001) 100 (m) (173-40 (m)
강간등 치사죄	15년	후단	강요죄	7년 	324조 1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특수강요죄	10년	324조 2항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인질상해·치상죄 - 인질살해죄	15년 25년	324조의 3 324조의4
' 이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년	305조,301조	인질치사죄	 15년	전단 324조의4 후단
◇ 명예에 관	한 죄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_1 11 = 11 21	1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 절도와 강.	도의 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절도죄	7년	32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모욕죄	5년	31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강도죄	10년	333조
신용훼손죄	7년	31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 비밀침해	의 죄 ◇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비밀침해죄	5년	31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강도살인죄	25년	338조전단
◇ 주거침입	의죄 🔷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319조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특수주 거침입죄	7년	320조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340조 1항, 2항
주거 · 신체수색죄	5년	321조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340조3항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 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341조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www.klac.o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2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3조	
준사기죄	10년	34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제364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 글 게 ㅋ ㅇ ㅋ	최 ^		
부당이득죄	5년	349조	∨ €44	4 🗸		
공갈죄	10년	350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36조	
특수공갈죄	10년	350조의 2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횡령, 배임죄	7년	355조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배임수뢰죄	7년	357조1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배임증뢰죄	5년	357조2항	특수손괴죄	10년	제369조 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360조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